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**보 도 자 료**	보다 나은 정부

2019년 3월 26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3. 25(월) 오전 11시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19. 3. 22(금)	담당부서	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
담 당	황병소 과장(044-203-5230) 이대섭 과장(044-201-3855)	담 당 자	정두식 사무관(044-203-5234) 이정록 주무관(044-201-3861)

3.26.부터 일반인의 LPG차량 신규·변경·이전 등록 가능

-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일부개정법률 공포·시행 -

□ **3.26.(화)**부터 일반인이 **모든 액화석유가스(LPG) 차량을 신규·변경·이전 등록**하거나, **휘발유나 경유차를 액화석유가스 차량으로 개조하는 것이 가능**해진다.

* LPG(Liquefied Petroleum Gas : 액화석유가스) : 원유 정제과정 또는 원유·셰일가스 채굴과정에서 얻어지는 프로판(Propane : C_3H_8)과 부탄(Butane : C_4H_{10})의 혼합물로 주로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됨

□ **산업통상자원부**는 3.19.(수)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수송용 **액화석유가스(LPG)** 연료 사용제한을 폐지하는 **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일부 개정 법률이 3.26일**(화) **공포·시행**한다고 밝혔다.

○ 이에 따라, 3.26일부터 **일반인이 모든 신규 또는 중고 액화석유가스(LPG)차량을 자유롭게 매매가 가능**하여, **해당 시·군·구청 소속 자동차등록업무 담당기관에서 액화석유가스 차량을 신규·변경·이전 등록할 수 있다.**

○ 또한, 자동차 구조변경업체에서 **일반인이 기존 보유하고 있는 휘발유차나 경유차를 액화석유가스(LPG) 차량으로 개조하는 것도 가능**해진다.

□ 한편, 이번 공포·시행된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일부 개정법률에는 **기존 액화석유가스(LPG) 연료 사용제한을 위반한 사용자*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분 관련 법률 조항**도 폐지**되었다.

* 장애인, 국가유공자 등이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와 공동명의로 LPG차량을 소유·사용하다가 등본상 세대가 분리되면서 명의 변경을 하지않아 LPG연료 사용제한을 위반한 경우가 대다수

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제73조(과태료)제3항 :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**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5. 제28조에 따른 제한을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한 자

□ **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'법률 시행 후 액화석유가스(LPG) 차량 신규·변경·이전등록업무 수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당 시·군·구청 소속 자동차등록업무 담당기관과 협의했다.'**라고 밝혔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정두식 사무관(☎ 044-203-523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